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◇ 제 · 개정 이유

-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강화 및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 · 보완하려는 것임.

◇ 주요내용

- 가. 감지부 및 조작부 배선 고온 작동 시험 도입 (안 제3조제23호)
- 나. 차단장치 회로 단선 표시 기능 추가 (안 제11조제3호)
- 다. 밸브 나사부 최소 두께(2.0 mm 이상) 도입 (안 제16조제7호)
- 라 기밀시험 사용 상 · 하한 온도반복(3 → 5 cycle) 강화 (안 제25조제2호)
- 마. 내압시험 압력(제1압력 또는 제2압력 → 제2압력, 5분) 강화 (안 제28조)
- 바. 파열압시험(충전압력 6배, 1분 후 내용적 변화 확인) 도입 (안 제28조의2)
- 사. 용기에 적용하는 내식시험 밸브까지 확대 적용 (제29조제1항)
- 아. 아연 15wt% 이상 함유 황동밸브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 도입 (제29조제1항제4호)
- 자. 스티커형 명판 내구성 확인시험 도입 (안 제35조제2항) 등